

대학원 한문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한문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 한문학과 소속 교수들은 한문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제4조 (교육과정)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과의 전공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.

제5조 (과목개설) 대학원 강의개설은 각 전공에 맞게 치우치지 않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(교·강사 배정) 대학원 수업은 학과 교수 및 각 분야의 전공자 및 권위자를 배정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장 논문지도

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1. 대학원생이 입학 후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자 할 경우 입학 첫 학기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통해 전공을 교체할 수 있다.
2. 전공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기 희망한 전공의 지도교수와 교체할 전공의 지도교수 모두에게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5장 자격시험

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 대학원 종합학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.

- ① 석사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한 석사학위 자격 연구보고서의 심사를 통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.
- ② 박사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포함)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.

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어야 한다. ※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.

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,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하며,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(연수)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하다.(예시 : 독일, 불어, 중어, 일어, 한문, 노어,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)

제6장 학위과정

제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, 학위작품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학과 내규로 문서화 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. 선택한 취득방법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할

수 있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인을 거쳐 심사에 회부한다.

제14조 (예비발표) 예비 발표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 교수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논문심사위원) 논문 심사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공 위주로 위촉하며 학과 전임 교수 2인 이상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본 내규 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안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내규에 추가한다.
2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.